



2020. 1. 1. WED



법원행정처



● 2020년도 대법원 시무식

2020년도 대법원 시무식이 2020. 1. 2.(목) 10:00 대법원 대강당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재경 각급 법원장, 재경 각급 법원 판사 및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목 차

contents

| | | |
|----|--------------------------------------|----|
| 규칙 |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 6 |
|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8 |
|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8 |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28 |
| |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30 |
|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2 |
| |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36 |
| |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 | 38 |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40 |
|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 44 |
| 내규 | 예산결산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규 | 53 |
| |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내규 | 55 |
| |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내규 | 56 |

| | | |
|---------------|---|-----------|
| 예규 |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 57 |
| |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59 |
| |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 80 |
| 신법령 목록 | | 86 |

규칙

◎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70호 2019. 12. 26. 공포)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1. 각 위원회가 연구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분석·번역 업무
2. 각 위원회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회의 등의 통역 업무
3. 사법정책·제도개선·재판사무지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분석·번역 업무 등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무

제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의2(조사위원)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 위원회가 연구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분석, 번역 업무 및 각 위원회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회의 등의 통역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p> | <p>제7조의2(조사위원) ① -----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 ----- ----- ----- ----- -----.</p> |
| <p><신 설></p> | <p>1. 각 위원회가 연구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분석·번역 업무</p> |
| | <p>2. 각 위원회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회의 등의 통역 업무</p> |
| | <p>3. 사법정책·제도개선·재판사무지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분석·번역 업무 등</p> |
| | <p>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무</p> |
| <p>② ~ ⑥ (생 략)</p> | <p>② ~ ⑥ (현행과 같음)</p> |
| <p><신 설></p> | <p>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p> |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71호 2019. 12. 26. 공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7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 실 장 | 심의관 | 담당관 | 분 장 사 무 |
|----------------|------|------|---|
| 기획 조정 실장 | 기획총괄 | | (현행과 같음) |
| | 기획조정 | | 1. 기획담당관, 기획운영담당관, 법무담당관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2. 기획조정실 내 부서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등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 |
| | | 기획 | 1. 사법행정, 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 립, 총괄, 조정 2. 국회, 행정부처 그 밖에 대외 관계 업무 3.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집행 및 관련사항의 처리 4.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 |
| | | 기획운영 | 1. 법원의 신설, 승격, 이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사법행정과 재판과정에서의 소통정책의 기획 및 집행 3. 사법행정자문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지원 4. 복지정책의 총괄 기획 및 집행 5. 각급 법원 건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 | | 법무 | (현행과 같음) |
| | | 국제 | (현행과 같음) |
| | | 조직 | (현행과 같음) |
| | | 예산 | (현행과 같음) |
| | | 시설 | (현행과 같음) |
| | | 기술 | (현행과 같음) |

[별표 1의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

| 실 장 | 심의관 | 분 장 사 무 |
|----------------|------------|---|
| 사법 지원 실장 | 사법지원 총괄 | (현행과 같음) |
| | 민사지원 제1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 본안, 보전처분, 비송, 조정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민사 본안, 보전처분, 비송, 조정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각종 업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재판업무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 |
| | 민사지원 제2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 지급명령, 송달,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민사집행, 지급명령, 송달,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각종 업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재판업무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사법보좌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 업무 7. 재판 관련 법원공무원의 업무수행 현황조사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8.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 |
| | 형사지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사, 선거, 소년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형사, 선거, 소년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 |

| | | |
|--|-------------|---|
| | | <p>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각종 업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재판업무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법원조사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 |
| | <p>특별지원</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 특허, 가사, 소년·가정보호, 도산 등에 관한 재판 제도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행정, 특허, 가사, 소년·가정보호, 도산 등에 관한 재판 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각종 업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재판업무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개인회생위원, 가사조사관 및 소년(소년형사)조사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 |
| | <p>사법정책</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법정책 및 제도 관련 법령 및 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등에 관한 사항 3. 사법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정책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 |

[별표 1의7]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분장사무표

| 명 칭 | | 분 장 사 무 |
|---------|-------|---|
| 인사총괄심의관 | 인사심의관 | 1. 인사총괄심의관 업무 보좌 |
| | 인사담당관 | 1. 법관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2. 법관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 3. 법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4. 법관의 해외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연수관리 5. 법원직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기본적 계획의 수립 6. 법관업무량 분석 7. 법관에 대한 상훈에 관한 사항 8. 인사제도, 해외연수제도 등에 관한 정책심의 및 기획 9. 재판연구원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10. 재판연구원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 11. 재판연구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 인사운영심의관 | |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의1]

[별표 1의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 실장 | 심의관 | 담당관 | 분장사무 |
|--------|------|-----|--|
| 기획조정실장 | 기획총괄 | | (생략) |
| | 기획조정 | | 1. 사법행정, 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 2. 국회, 행정부처 그 밖에 대외 관계 업무 3.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집행 및 관련사항의 처리 4.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 |
| | 기획운영 | | 1.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총괄심의관 보좌 2. 사법행정과 재판과정에서의 소통 정책의 기획 및 집행 3. 복지정책의 총괄 기획 및 집행 4. 각급 법원 건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총괄심의관이 지정한 업무 |
| | 법무 | | (생략) |
| 국 | | | (생략) |

| 실장 | 심의관 | 담당관 | 분장사무 |
|--------|------|------|---|
| 기획조정실장 | 기획총괄 | | (현행과 같음) |
| | 기획조정 | | 1. 기획담당관, 기획운영담당관, 법무담당관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2. 기획조정실 내 부서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등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 |
| | 기획 | | 1. 사법행정, 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 2. 국회, 행정부처 그 밖에 대외 관계 업무 3.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집행 및 관련사항의 처리 4.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 |
| | | 기획운영 | 1. 법원의 신설, 승격, 이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사법행정과 재판과정에서의 소통 정책의 기획 및 집행 3. 사법행정자문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지원 4. 복지정책의 총괄 기획 및 집행 |

현행

| | | |
|----|--|------|
| 제 | | |
| 조직 | | (생략) |
| 예산 | | (생략) |
| 시설 | | (생략) |
| 기술 | | (생략) |

개정안

| | | |
|--|----|----------------------------------|
| | | 5. <u>각급 법원 건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u> |
| | 법무 | (현행과 같음) |
| | 국제 | (현행과 같음) |
| | 조직 | (현행과 같음) |
| | 예산 | (현행과 같음) |
| | 시설 | (현행과 같음) |
| | 기술 | (현행과 같음) |

[별표 1의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

| | | | |
|--------|--------|-----|--|
| 실장 | 심의관 | 담당관 | 분장사무 |
| | | | (생략) |
| 사법지원실장 | 사법지원실장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 관련 법령·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 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각종 업무편람 발간에 관한 사항 3. 재판관련 법원공무원의 업무수행 |

[별표 1의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

| | | |
|--------|--------|--|
| 실장 | 심의관 | 분장사무 |
| | | (현행과 같음) |
| 사법지원실장 | 민사지원제1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 본안, 보전처분, 비송, 조정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민사 본안, 보전처분, 비송, 조정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 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각종 업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 현 행 | | 개 정 안 | |
|------|--|---------|--|
| | <p><u>현황조사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u></p> <p>4. <u>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u></p> <p>5. <u>사법보좌관, 개인회생위원, 조사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u></p> <p>6. <u>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 업무 총괄</u></p> <p>7. <u>그 밖에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u></p> | | <p>4. <u>재판업무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u> <u>에 관한 사항</u></p> <p>5. <u>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u></p> |
| 민사지원 | <p>1. <u>민사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u></p> <p>2. <u>민사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규칙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 회신에 관한 사항</u></p> <p>3. <u>재판관련 법원공무원의 업무수행</u> <u>현황조사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u></p> <p>4. <u>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u></p> <p>5. <u>법원공무원의 재판업무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p> <p>6. <u>사법보좌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u></p> <p>7. <u>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 업무</u></p> <p>8. <u>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u></p> <p>9. <u>사법지원실 내 심의관들의 업무 지원 및 관련 행정사무</u></p> | 민사지원 제2 | <p>1. <u>민사집행, 지급명령, 송달,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u></p> <p>2. <u>민사집행, 지급명령, 송달,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 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각종 업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u></p> <p>3. <u>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u></p> <p>4. <u>재판업무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u> <u>에 관한 사항</u></p> <p>5. <u>사법보좌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u></p> <p>6. <u>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 업무</u></p> <p>7. <u>재판 관련 법원공무원의 업무수행</u> <u>현황조사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u></p> <p>8. <u>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u></p> |
| 형사지원 | <p>1. <u>형사, 선거, 소년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u></p> <p>2. <u>형사, 선거, 소년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 회신에 관한</u></p> | 형사지원 | <p>1. <u>형사, 선거, 소년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u></p> <p>2. <u>형사, 선거, 소년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 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각종 업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u></p> <p>3. <u>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u></p> |

| 현 행 | | 개 정 안 | |
|----------------|--|--|----------|
| 특별 제도 지원 | <p>사항</p> <p>3. <u>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u></p> <p>4. <u>법원공무원의 재판업무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p> <p>5. <u>법원조사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u></p> <p>6. <u>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u></p> <p>7. <u>사법지원실 내 심의관들의 업무 지원 및 관련 행정사무</u></p> | <p>4. <u>재판업무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p> <p>5. <u>법원조사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u></p> <p>6. <u>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u></p> | |
| | <p>1. <u>행정, 특히, 가사, 소년·가정보호, 도산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u></p> <p>2. <u>행정, 특히, 가사, 소년·가정보호, 도산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 회신에 관한 사항</u></p> <p>3. <u>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u></p> <p>4. <u>법원공무원의 재판업무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p> <p>5. <u>개인회생위원, 가사조사관 및 소년(소년형사)조사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u></p> <p>6. <u>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시행</u></p> <p>7. <u>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u></p> <p>8. <u>사법지원실 내 심의관들의 업무 지원 및 관련 행정사무</u></p> | <p>1. <u>행정, 특히, 가사, 소년·가정보호, 도산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u></p> <p>2. <u>행정, 특히, 가사, 소년·가정보호, 도산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 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각종 업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u></p> <p>3. <u>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u></p> <p>4. <u>재판업무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p> <p>5. <u>개인회생위원, 가사조사관 및 소년(소년형사)조사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u></p> <p>6. <u>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u></p> | 특별 지원 |
| | | <p>1. <u>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u></p> <p>2. <u>사법정책 및 제도 관련 법령 및 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 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등에 관한 사항</u></p> <p>3. <u>사법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u></p> <p>4. <u>사법지원실장이 사법정책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u></p> | 사법 정책 |

현행

개정안

[별표 1의7]

[별표 1의7]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분장사무표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분장사무표

| 명칭 | 분장사무 |
|---------|--|
| 인사총괄심의관 | 1. 인사총괄심의관 업무 보좌 2. 법관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 계획 마련과 시행 3. 법관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 4. 법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5. 법관의 해외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6. 법원직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기본적 계획의 수립 7. 법관업무량 분석 8. 인사제도, 해외연수제도 등에 관한 정책심의 및 기획 |
| | 1. 법관에 대한 상훈에 관한 사항 2. 재판연구원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3. 재판연구원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 4. 재판연구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5. 법관 해외연수 관리 |
| 인사운영심의관 | (생략) |

| 명칭 | 분장사무 |
|---------|--|
| 인사총괄심의관 | 1. 인사총괄심의관 업무 보좌 2. 법관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 계획 마련과 시행 3. 법관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 4. 법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5. 법관의 해외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연수관리 6. 법원직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기본적 계획의 수립 7. 법관업무량 분석 8. 법관에 대한 상훈에 관한 사항 9. 재판연구원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10. 재판연구원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 11. 재판연구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 | 1. 인사총괄심의관 업무 보좌 2. 법관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 계획 마련과 시행 3. 법관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 4. 법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5. 법관의 해외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6. 법원직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기본적 계획의 수립 7. 법관업무량 분석 8. 인사제도, 해외연수제도 등에 관한 정책심의 및 기획 9. 재판연구원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10. 재판연구원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 11. 재판연구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 인사운영심의관 | (현행과 같음) |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72호 2019. 12. 26. 공포)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제2항의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신설하여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300명(9급 300명)

9. 그 밖의 정원 중 43명(2급 1명, 3급 2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 7급 8명, 8급 12명, 9급 8명)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비서”를 “법원보안관리대원과 비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법원공무원정원표

| | (단위: 명) |
|-------------------------|---------|
| 총 계 | 14,340 |
| 경력직 계 | 14,030 |
| 특정직 계 | 55 |
| 법원행정처장 | 1 |
| 법원행정처차장 | 1 |
| 사법연수원장 | 1 |
| 사법연수원부원장 | 1 |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1 |
| 사법연수원 교수 | 50 |
| 일반직 계 | 13,975 |
| 법원관리관(1급) | 1 |
| 법원이사관(2급) | 18 |
| 이사관(2급) | 1 |
| 법원부이사관(3급) | 59 |
| 기술부이사관(3급) | 1 |
| 법원부이사관(3급) 또는 법원서기관(4급) | 20 |
| 법원서기관(4급) | 379 |
| 법원서기관(4급) 또는 비서관(4급상당) | 1 |
| 법원서기관(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 13 |
| 법원서기관(4급) 또는 조사서기관(4급) | 1 |
| 전산서기관(4급) | 3 |
| 기술심리서기관(4급) | 15 |
| 기술조사서기관(4급) | 5 |

| | |
|--|-------|
| 사서서기관(4급) | 2 |
| 기술서기관(4급) | 2 |
| 서기관(4급) | 1 |
| 법원서기관(4급) 또는 법원사무관(5급) | 156 |
| 전산서기관(4급) 또는 전산사무관(5급) | 2 |
| 기술서기관(4급) ·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 1 |
| 기술서기관(4급) · 기계사무관(5급) · 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 1 |
| 기술조사서기관(4급) 또는 기술조사사무관(5급) | 8 |
| 법원사무관(5급) | 1,038 |
| 법원사무관(5급) 또는 등기사무관(5급) | 34 |
| 법원사무관(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 13 |
| 법원사무관(5급) 또는 조사사무관(5급) | 74 |
| 전산사무관(5급) | 16 |
| 통계사무관(5급) | 1 |
| 경위사무관(5급) | 7 |
| 기술심리사무관(5급) | 2 |
| 기술조사사무관(5급) | 10 |
| 사서사무관(5급) | 6 |
| 통역사무관(5급) | 1 |
|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 5 |
| 기계사무관(5급) · 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 6 |
| 법원주사(6급) | 1,924 |
| 조사주사(6급) | 40 |
| 전산주사(6급) | 54 |
| 통계주사(6급) | 1 |
| 경위주사(6급) | 40 |

| | |
|------------------------|-------|
| 사서주사(6급) | 26 |
| 토목주사(6급) 또는 건축주사(6급) | 7 |
| 기계주사(6급) 또는 전기주사(6급) | 12 |
| 보건주사(6급) | 1 |
| 화학주사(6급) | 2 |
| 행정주사(6급) 또는 속기주사(6급) | 39 |
| 관리주사(6급) | 1 |
| 기계운영주사(6급) | 1 |
| 법원주사보(7급) | 1,287 |
| 법원주사보(7급) 또는 등기주사보(7급) | 144 |
| 조사주사보(7급) | 82 |
| 전산주사보(7급) | 33 |
| 통계주사보(7급) | 1 |
| 경위주사보(7급) | 34 |
| 사서주사보(7급) | 13 |
| 토목주사보(7급) 또는 건축주사보(7급) | 1 |
| 기계주사보(7급) 또는 전기주사보(7급) | 1 |
| 보건주사보(7급) | 4 |
| 행정주사보(7급) 또는 속기주사보(7급) | 86 |
| 관리주사보(7급) | 2 |
| 보안주사보(7급) | 1 |
| 법원서기(8급) | 2,650 |
| 법원서기(8급) 또는 등기서기(8급) | 269 |
| 전산서기(8급) | 26 |
| 통계서기(8급) | 4 |
| 경위서기(8급) | 144 |
| 사서서기(8급) | 13 |

| | |
|------------------------|-------|
| 건축서기(8급) | 2 |
| 기계서기(8급) | 1 |
| 전기서기(8급) | 14 |
| 화학서기(8급) | 1 |
| 행정서기(8급) 또는 속기서기(8급) | 47 |
| 관리서기(8급) | 3 |
| 전기운영서기(8급) | 4 |
| 환경서기(8급) | 1 |
| 병기서기(8급) | 1 |
| 보안서기(8급) | 2 |
| 법원서기보(9급) | 1,537 |
| 법원서기보(9급) 또는 등기서기보(9급) | 180 |
| 전산서기보(9급) | 15 |
| 통계서기보(9급) | 3 |
| 경위서기보(9급) | 102 |
| 사서서기보(9급) | 7 |
| 건축서기보(9급) | 5 |
| 기계서기보(9급) | 45 |
| 전기서기보(9급) | 15 |
| 보건서기보(9급) | 2 |
| 행정서기보(9급) 또는 속기서기보(9급) | 2,219 |
| 관리서기보(9급) | 382 |
| 기계운영서기보(9급) | 19 |
| 전기운영서기보(9급) | 2 |
| 환경서기보(9급) | 113 |
| 조경서기보(9급) | 6 |
| 보안서기보(9급) | 95 |

| | |
|--------------------------|-----|
| 보안관리서기보(9급) | 115 |
| 보안관리서기보(9급) 또는 별정직(9급상당) | 156 |
| 기록연구관 | 1 |
| 기록연구사 | 4 |
|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보좌 담당) | 8 |
|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 20 |
|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 1 |
| 전문경력관 나군(자료 담당) | 1 |
| 특수경력직 계 | 310 |
| 정무직 계 | 2 |
| 대법원장 비서실장 | 1 |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1 |
| 별정직 계 | 308 |
| 비서관(2급상당) | 1 |
| 비서관(5급상당) | 1 |
| 비서(6급상당) | 2 |
| 법원보안관리대원(7급상당) | 10 |
| 비서(7급상당) | 14 |
| 비서(8급상당) | 6 |
| 법원보안관리대원(8급상당) | 73 |
| 비서(9급상당) | 10 |
| 법원보안관리대원(9급상당) | 91 |
| 사법연수생 | 100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1. ~ 7. (생략) <u><신설></u> 8. <u>그 밖의 정원 중 35명(2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8명, 8급 12명, 9급 8명)</u> ③ (생략) |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u>보안업무를 담당하는 300명(9급 300명)</u> 9. <u>그 밖의 정원 중 43명(-----, 3급 2명, 4급 3명, -----, 5급 6명, -----)</u> ③ (현행과 같음) |
|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① (생략) 1. · 2. (생략)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u>비서에 관한 직위</u>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 -----, <u>법원보안관리대원과 비서</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u>[별표]</u> 법원공무원정원표 (단위: 명) | <u>[별표]</u> 법원공무원정원표 (단위: 명) |
| 총 계 <u>14,276</u> | 총 계 <u>14,340</u> |
| 경력직 계 <u>13,800</u> | 경력직 계 <u>14,030</u> |
| 특정직 계~사법연수원 교수 (생략) | 특정직 계~사법연수원 교수 (현행과같음) |
| 일반직 계 <u>13,745</u> | 일반직 계 <u>13,975</u> |
| 법원관리관(1급)~이사관(2급) (생략) | 법원관리관(1급)~이사관(2급) (현행과같음) |

| 현행 | | 개정안 | |
|---|--------------|---|--------------|
| 법원부이사관(3급) | <u>56</u> | 법원부이사관(3급) | <u>59</u> |
| 기술부이사관(3급)~법원부이사관(3급) 또는 법원서기관(4급) | (생략) | 기술부이사관(3급)~법원부이사관(3급) 또는 법원서기관(4급) | (현행과같음) |
| 법원서기관(4급) | <u>376</u> | 법원서기관(4급) | <u>379</u> |
| 법원서기관(4급) 또는 비서관(4급상당)~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4급) | (생략) | 법원서기관(4급) 또는 비서관(4급상당)~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4급) | (현행과같음) |
| 전산서기관(4급) | <u>1</u> | 전산서기관(4급) | <u>3</u> |
| 기술심리서기관(4급)~서기관(4급) | (생략) | 기술심리서기관(4급)~서기관(4급) | (현행과같음) |
| 법원서기관(4급) 또는 법원사무관(5급) | <u>154</u> | 법원서기관(4급) 또는 법원사무관(5급) | <u>156</u> |
| 전산서기관(4급) 또는 전산사무관(5급)~법원사무관(5급) 또는 조사사무관(5급) | (생략) | 전산서기관(4급) 또는 전산사무관(5급)~법원사무관(5급) 또는 조사사무관(5급) | (현행과같음) |
| 전산사무관(5급) | <u>10</u> | 전산사무관(5급) | <u>16</u> |
| 통계사무관(5급)~기계사무관(5급)·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 (생략) | 통계사무관(5급)~기계사무관(5급)·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 (현행과같음) |
| 법원주사(6급) | <u>1,923</u> | 법원주사(6급) | <u>1,924</u> |
| 조사주사(6급) | <u>35</u> | 조사주사(6급) | <u>40</u> |
| 전산주사(6급) | <u>47</u> | 전산주사(6급) | <u>54</u> |
| 통계주사(6급)~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6급) | (생략) | 통계주사(6급)~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6급) | (현행과같음) |
| 기계주사(6급) 또는 전기주사(6급) | <u>11</u> | 기계주사(6급) 또는 전기주사(6급) | <u>12</u> |
| 보건주사(6급)~기계운영주사(6급) | (생략) | 보건주사(6급)~기계운영주사(6급) | (현행과같음) |

| 현행 | | 개정안 | |
|---|--------------|---|--------------|
| 전기운영주사(6급) | <u>1</u> | (삭제) | (삭제) |
| 법원주사보(7급) | <u>1,297</u> | 법원주사보(7급) | <u>1,287</u> |
| 법원주사보(7급) 또는 등기주사보(7급) | <u>132</u> | 법원주사보(7급) 또는 등기주사보(7급) | <u>144</u> |
| 조사주사보(7급) | <u>74</u> | 조사주사보(7급) | <u>82</u> |
| 전산주사보(7급) | <u>25</u> | 전산주사보(7급) | <u>33</u> |
| 통계주사보(7급)~경위주사보(7급) | (생략) | 통계주사보(7급)~경위주사보(7급) | (현행과같음) |
| 사서주사보(7급) | <u>12</u> | 사서주사보(7급) | <u>13</u> |
| 토목주사보(7급) 또는 건축주사보(7급)~법원서기(8급) 또는 등기서기(8급) | (생략) | 토목주사보(7급) 또는 건축주사보(7급)~법원서기(8급) 또는 등기서기(8급) | (현행과같음) |
| 전산서기(8급) | <u>17</u> | 전산서기(8급) | <u>26</u> |
| 통계서기(8급)~경위서기(8급) | (생략) | 통계서기(8급)~경위서기(8급) | (현행과같음) |
| 사서서기(8급) | <u>12</u> | 사서서기(8급) | <u>13</u> |
| 건축서기(8급)~기계서기(8급) | (생략) | 건축서기(8급)~기계서기(8급) | (현행과같음) |
| 전기서기(8급) | <u>12</u> | 전기서기(8급) | <u>14</u> |
| 화학서기(8급)~기계운영서기(8급) | (생략) | 화학서기(8급)~기계운영서기(8급) | (현행과같음) |
| 전기운영서기(8급) | <u>6</u> | 전기운영서기(8급) | <u>4</u> |
| 환경서기(8급)~법원서기보(9급) 또는 등기서기보(9급) | (생략) | 환경서기(8급)~법원서기보(9급) 또는 등기서기보(9급) | (현행과같음) |
| 전산서기보(9급) | <u>14</u> | 전산서기보(9급) | <u>15</u> |
| 통계서기보(9급)~경위서기보(9급) | (생략) | 통계서기보(9급)~경위서기보(9급) | (현행과같음) |
| 사서서기보(9급) | <u>6</u> | 사서서기보(9급) | <u>7</u> |
| 건축서기보(9급) | <u>3</u> | 건축서기보(9급) | <u>5</u> |
| 기계서기보(9급) | <u>35</u> | 기계서기보(9급) | <u>45</u> |

| 현행 | | 개정안 | |
|------------------------------------|------------|------------------------------------|-------------|
| 전기서기보(9급)~관리서기보(9급) | (생략) | 전기서기보(9급)~관리서기보(9급) | (현행과같음) |
| 건축운영서기보(9급) | 2 | (삭제) | (삭제) |
| 기계운영서기보(9급) | 29 | 기계운영서기보(9급) | 19 |
| 전기운영서기보(9급)~보안서기보(9급) | (생략) | 전기운영서기보(9급)~보안서기보(9급) | (현행과같음) |
| 보안관리서기보(9급) | 102 | 보안관리서기보(9급) | 115 |
| (신설) | | 보안관리서기보(9급) 또는 별정직(9급상당) | 156 |
| 기록연구관 | (생략) | 기록연구관 | (현행과같음) |
| 기록연구사 | 3 | 기록연구사 | 4 |
|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보좌 담당)~전문경력관 나군(자료담당) | (생략) |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보좌 담당)~전문경력관 나군(자료담당) | (현행과같음) |
| 특수경력직 계 | 476 | 특수경력직 계 | 310 |
| 정무직 계~법원공무원교육원장 | (생략) | 정무직 계~법원공무원교육원장 | (현행과같음) |
| 별정직 계 | 474 | 별정직 계 | 308 |
| 재판연구관(2급상당) | 3 | (삭제) | (삭제) |
| 비서관(2급상당) | (생략) | 비서관(2급상당) | (현행과같음) |
| 재판연구관(3급상당) | 7 | (삭제) | (삭제) |
| 비서관(5급상당)~비서(9급상당) | (생략) | 비서관(5급상당)~비서(9급상당) | (현행과같음) |
| 법원보안관리대원(9급상당) | 247 | 법원보안관리대원(9급상당) | 91 |
| 사법연수생 | (생략) | 사법연수생 | (현행과같음)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73호 2019. 12. 26.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2 비고 나) 중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일반법관”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일반법관 및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4호 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법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별표 6의2 비고 나)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6의2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 지급대상 | 월지급액 | 비고 |
|-----------------|------------|---|
| 대법원장 | 2,250,000원 | 가) (생략) |
| 대법관 | 1,650,000원 | 나)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일반법관은 20만원을 감액한다. |
|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 950,000원 | |
|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 750,000원 | |
|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 | 500,000원 | |

개정안

별표 6의2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 지급대상 | 월지급액 | 비고 |
|-----------------|------------|---|
| 대법원장 | 2,250,000원 | 가) (현행과 같음) |
| 대법관 | 1,650,000원 | 나) ----- |
|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 950,000원 | ----- |
|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 750,000원 | ----- 일 |
|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 | 500,000원 | 반법관 및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4호 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법관----- |
| | | ----- |
| | | ----- |

◎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74호 2019. 12. 26.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차세대전자소송 사업계획의 수립
2.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3.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집행 및 점검
4. 그 밖에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조요청 등)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국과 관계 기관에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① 단장은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과 법원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75호 2019. 12. 26. 공포)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을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특별자치시의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06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한다.

제197조제1항 중 “「자동차저당법」 제6조의2”를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제8조”로 한다.

제211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5조(집행참여자의 의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특별시·광역시·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 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규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개 정 안

제5조(집행참여자의 의무)-----

----- 특별시·광역시·구 또는 동 직원, 특별자치시의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항공안전법」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현행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음부터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① (생략)
②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 108조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라고 규정된 것은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본다.
③ (생략)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①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저당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② (생략)

제211조(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 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개정안

-----.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
③ (현행과 같음)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①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8조---

-----.

② (현행과 같음)
제211조(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 현행 | 개정안 |
|--|---|
| <p>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어선원부·수상레저기구등 등록원부”로 보며, “<u>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u>”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u>지방해양항만청장</u>”이나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으로 본다.</p> | <p>----- ----- -----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u>”----- --“<u>지방해양수산청장</u>”----- -----.</p> |

◎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76호 2019. 12. 26.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미래등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미래등기 사업계획의 수립
2. 미래등기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3. 미래등기 사업의 집행 및 점검
4. 그 밖에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조요청 등)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국과 관계 기관에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① 단장은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과 법원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77호 2019. 12. 26. 공포)

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50명”을 “30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u>250명</u> 으로 한다. | 제2조(정원) ----- <u>300명</u> -----.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78호 2019. 12. 26. 공포)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 중 “7년 이상”을 “8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나목 중 “1년 이상”을 “4년 이상”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p> <p>①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 법원임기제공무원,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한다.</p> <p>②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p> <p>1.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p> <p>가.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p> <p>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p> <p>2.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p> <p>가.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p> | <p>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p> <p>① -----재판연구관은 법원임기제공무원, ----- ----- ----- ----- -----.</p> <p><삭 제></p> |

현행

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③ (생략)

1. (생략)

가. (생략)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2. (생략)

가. (생략)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3. (생략)

〈신설〉

개정안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8년-----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4년-----

3. (현행과 같음)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u>25명</u>으로 한다.</p> | <p>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u>30명</u>----- -----.</p> |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79호 2019. 12. 26.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폭력”을 “음주운전, 성폭력”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2. 제1항제4호의 경우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제4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과하여야 하며”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0”을 “40”으로 한다.

제47조의2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9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 제3항”으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등법원 관내 기관 간에 전보할 수 있다.

1.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해당 소속기관에 임용된 경우
2.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해당 고등법원 관내 다른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별표 3 중 “고등법원장”란에 (7)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수임자 | 위임사항 |
|----------------|--|
|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 <p style="text-align: center;">고 등 법 원 장</p> <p>(3)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p> <p>(4)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일반직(법원·등기사무직렬) 7급으로의 승진임용권. 다만,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p> <p>(5) 대전고등법원장은 대전고등법원 및 그 관내법원과 특허법원간의 위 (3)의 전보권 및 위 (4)의 승진임용권을 행사하되 이 경우에는 특허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6)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겸임권</p> <p>(7) 소속 재판연구원 및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재판연구원의 전보권</p> |

별표 5의5 제1호 전문임기제의 나급의 자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6의4 비고란의 제2호 중 “청각장애(2·3급)”를 “청각장애인”으로, “기준점수”를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규칙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53조제2항·제3항”을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p> <p>1. (생략)</p> <p>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u>성폭력</u>,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p> <p>가. ~ 다. (생략)</p> <p>② ~ ⑦ (생략)</p> | <p>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
| <p>제47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② <u>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3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u></p> | <p>제47조(특별승진임용) ①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p> <p>1. 제1항제1호·제3호·제6호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p> <p>2. 제1항제4호의 경우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p> |

현행

개정안

③·④ (생략)

〈신설〉

〈신설〉

제47조2(근속승진임용) ① 「법원공무원 정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 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47조2(근속승진임용)

①

현 행

원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⑥ ~ ⑦ (생략)

〈신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53조(전보의 제한) ① · ② (생략)

〈신설〉

개 정 안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40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

제53조(전보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등법원 관내 기관 간에 전보할 수 있다.

현행

③ (생략)

④ 공무원을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보사유가 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 제2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별표 3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 수임자 | | 위임사항 |
|----------------|-------|-----------------------------------|
| 이상 생략 | | |
|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 공통 | 생략 |
| | 고등법원장 | (3) ~ (6) 생략 <u><신설></u> |
| 이하 생략 | | |

별표 5의5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19조제4항 관련)

개정안

1.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해당 소속기관에 임용된 경우

2.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해당 고등법원 관내 다른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④ (현행 제③항과 같음)

⑤ -----

-----제2항 단서, 제3항-----
-----.

⑥ (현행 제⑤항과 같음)

별표 3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 수임자 | | 위임사항 |
|----------------|-------|---|
| 이상 생략 | | |
|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 공통 | 현행과 같음 |
| | 고등법원장 | (3) ~ (6) 현행과 같음 (7) 소속 재판연구원 및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재판연구원의 전보권 |
| 이하 생략 | | |

별표 5의5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19조제4항 관련)

현행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 기준

| 종류 | 채용등급 | 자격기준 |
|---------------|------|---|
| 전문 임기 제 | 가급 | (생략) |
|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생략) |
| | 라급 | (생략) |
| | 마급 | (생략) |
| 한시 임기 제 | 5호 | (생략) |
| | 6호 | (생략) |
| | 7호 | (생략) |
| | 8호 | (생략) |
| | 9호 | (생략) |

※ 비고

1. ~ 3. (생략)

별표 6의4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관련)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생략) | (생략) |

개정안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 기준

| 종류 | 채용등급 | 자격기준 |
|---------------|------|---------------------------------|
| 전문 임기 제 | 가급 | (현행과 같음) |
| | 나급 |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
| | 다급 | (현행과 같음) |
| | 라급 | (현행과 같음) |
| | 마급 | (현행과 같음) |
| 한시 임기 제 | 5호 | (현행과 같음) |
| | 6호 | (현행과 같음) |
| | 7호 | (현행과 같음) |
| | 8호 | (현행과 같음) |
| | 9호 | (현행과 같음) |

※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6의4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관련)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

- 비고 : 1. (생략)
2. 법원행정처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2·3급)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 검정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안

- 비고 : 1. (현행과 같음)
2. -----
----- 청각장애인

----- 기준
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
-----.

내규

● 예산결산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95호 2019. 12. 17. 결재)

제1조(목적)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예산요구·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대한 자문수행 임무의 지원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예산결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실무를 지원한다.

1. 예산요구서·성과계획서의 검토
2. 예산편성 실·국별 요구사항의 검토
3. 결산보고서·성과보고서의 검토
4. 그 밖에 예산요구·예비금 지출·결산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검토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사법등기국장으로 한다.

- ② 위원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개최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시 부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서기는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제7조(보고) ① 위원장은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예산요구서 제출 30일 전까지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한다.

② 예비금 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의 후 7일 이내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위원장, 간사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96호 2019. 12. 12. 결재)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부서)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설치한다.

제3조(추진단의 운영) ① 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부단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단장은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단 내에 단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추진단 내에 설치된 팀의 팀장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팀원을 통솔하며 팀에 부여된 임무를 처리한다.

제4조(추진단 업무의 보고 및 심의) ① 단장은 매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차세대전자소송의 주요 업무와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 보고를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은 사법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차세대전자소송 관련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안 준비
2. 차세대전자소송 관련 예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97호 2019. 12. 12. 결재)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부서) 미래등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설치한다.

제3조(추진단의 운영) ① 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단장은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단 내에 단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추진단 내에 설치된 팀의 팀장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팀원을 통솔하며 팀에 부여된 임무를 처리한다.

제4조(추진단 업무의 보고 및 심의) ① 단장은 매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미래등기의 주요 업무와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 보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법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미래등기 관련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안 준비
2. 미래등기 관련 예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규

●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02호 2019. 12. 24.결재)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200,000원 범위 내의”를 “250,000원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 (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 | 제3조 (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 |
| <p>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u>100,000원</u> 이내의 안전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p> | <p>① ----- ----- ----- 150,000원----- ----- ----- ----- ----- ----- -----</p> |
| <p>② 주제발표문이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A4 용지 30장(200자 원고지 120장)을 초과하고,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도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u>200,000원 범위 내</u>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p> | <p>② ----- ----- ----- ----- ----- ----- 250,000원의 범위에서----- -----</p>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03호 2019. 12. 26. 결재)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탁법」 제9조제4항, 「공탁규칙」 제60조의2를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출급·회수 청구”를 “출급·회수청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상사건 및 대상자)

①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4년·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변제·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② 제1항의 경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③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문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안내문 발송 및 처리)”를 “(안내문 발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양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다.

1. 변제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1(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2. 집행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2(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3(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4. 그 밖의 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4(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제6조제3항 전단 중 “발송한 안내문”을 “안내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 ①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다만,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 ③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
- ④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1.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건수 및 도달 건수
2.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후 공탁금을 출급·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
3. 그 밖에 안내문 발송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중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로 한다.

별지 1, 2, 3,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947호)은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p> | <p>제1조(목적) -----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 ----- ----- -----.</p> |
| <p>제3조(안내 방법) ① 안내는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생략)</p> | <p>제3조(안내 방법) ① ----- 출급·회수청구----- -----.</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4조(대상사건 및 대상자)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일 경우는 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p> | <p>제4조(대상사건 및 대상자) ①----- ----- 만 2년, 4년, 6년 및 ----- ----- 10만원 ----- 호의 ----- ----- ----- .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한다.</p> |
| <p>1. 2. (생략)</p> <p>3. 그 밖에 공탁사건의 공탁자·피공탁자들</p> | <p>1. 2. (현행과 같음)</p> <p><삭제></p> |
| <p><신설></p> <p><신설></p> | <p>② 제1항의 경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p> <p>③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문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p> |

현행

제5조(조사) 매년 제4조의 대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탁금의 지급제한사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선별한다.

제6조(안내문 발송 및 처리) ① (생략)

② 변제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1, 집행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2,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3, 그 밖에 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4의 각 양식에 따른 해당 안내문을 발송하되,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에 첨부된 별지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③ 발송한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는 폐기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일 경우에는 안내문을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개정안

〈삭제〉

제6조(안내문 발송)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양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다.

1. 변제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1(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2. 집행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2(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3(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4. 그 밖의 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4(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③ 안내문-----
-----, 다만, -----
-----.

제6조의2(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①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③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 현행 | 개정안 |
|---|--|
| <p>제7조(보고) 매년 1. 31.까지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결과(총 조사대상 사건 수, 안내문 발송 건수, 안내문 발송 후 출급·회수한 사건 수 및 지급액 등)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p> | <p>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 ④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p> <p>제7조(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건수 및 도달 건수 2.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후 공탁금을 출급·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 3. 그 밖에 안내문 발송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p>제8조(유의사항) 안내문은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p> | <p>제8조(유의사항) ----- 또는 ----- ----- -----.</p> |

[별지 1]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 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관 할 공 탁 소 | | | |
| 공탁사건번호 | 년 금 제 호 | 공 탁 종 류 | 변제공탁 |
| 금 액 (잔액)* | 원 | 공 탁 일 자 | 년 월 일 |
| 공 탁 자 | | | |
| 피 공 탁 자 | | | |
| 관 련 사 건 | | | |
| 지급제한사건 | | | |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피공탁자로 한 위 변제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2. 반대급부 이행조건 또는 지급제한사유*가 있거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인 경우 등 공탁금 출급청구권 행사에 관한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을 말하며,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에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6.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신분확인관계상 공탁사건의 내용을 알아보실 수 없으므로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변제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
|--|---|
| 1. 공탁통지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5.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불확지 공탁의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담보취소결정정보 3.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
| 일반집행공탁 | 경매집행공탁 |
| 1. 증명서 (기타집행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신분증 | 1. 증명서 (경매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5. 신분증 |
|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은 경매계 또는 기타집행계에도 제출하셔야 하므로 각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
| 해방공탁(공탁자의 회수청구시) | 기타 공통 사항 |
|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가압류 취하(해제)증명원] 또는 [가압류취소결정정보 및 송달증명원] ★ 접수증명원 및 집행해제증명원은 안 됨 | ▶ 법인 아닌 사단·재단 (중증, 교회, 사찰 등) 또는 관공서 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이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

| | |
|---|--|
| <p>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6. 신분증</p> | <p>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부터 지급청구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p> |
|---|--|

▣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①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②위임인의 인감증명서, ③대리인의 신분증(위임인의 신분증 불요)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공탁금 청구하는 경우 ①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②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③부모 1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위임장(배우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또는 다른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①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또는 관할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2]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 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관 할 공 탁 소 | | | |
| 공탁사건번호 | 년 금 제 호 | 공 탁 종 류 | 집행공탁 |
| 금 액 (잔액)* | 원 | 공 탁 일 자 | 년 월 일 |
| 공 탁 자 | | | |
| 피 공 탁 자 | | | |
| 관 련 사 건 | | | |
| 지급제한사건 | | | |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피공탁자로 한 위 집행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급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절차와 관련된 집행공탁의 경우는 관련사건의 부서(경매계 또는 기타집행

계)를 경유하여 증명서를 받아 이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5.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신분확인관계상 공탁사건의 내용을 알아보실 수 없으므로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변제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
|--|---|
| 1. 공탁통지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5.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불확지 공탁의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담보취소결정정보 3.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
| 일반집행공탁 | 경매집행공탁 |
| 1. 증명서 (기타집행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신분증 | 1. 증명서 (경매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5. 신분증 |
|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은 경매계 또는 기타집행계에도 제출하셔야 하므로 각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
| 해방공탁(공탁자의 회수청구시) | 기타 공통 사항 |
|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가압류 취하(해제)증명원] 또는 [가압류취소결정정보 및 송달증명원] ★ 접수증명원 및 집행해제증명원은 안됨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 | ▶ 법인 아닌 사단·재단 (중증, 교회, 사찰 등) 또는 관공서 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이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

| | |
|---|--|
| <p>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6. 신분증</p> | <p>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부터 지급청구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p> |
|---|--|

▣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①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②위임인의 인감증명서, ③대리인의 신분증(위임인의 신분증 불요)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공탁금 청구하는 경우 ①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②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③부모 1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위임장(배우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또는 다른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①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또는 관할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3]

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 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관 할 공 탁 소 | | | |
| 공탁사건번호 | 년 금 제 호 | 공 탁 종 류 | 재판상 보증공탁 |
| 금 액 (잔액)* | 원 | 공 탁 일 자 | 년 월 일 |
| 공 탁 자 | | | |
| 피 공 탁 자 | | | |
| 관 련 사 건 | | | |
| 지급제한사건 | | | |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금·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공탁자로 한 위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금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공탁금 출금·회수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취소결정정보 및 확정증명은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취소는 ①담보제공자(공탁자)가 승소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담보제공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소송완결 후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 최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5.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신분확인관계상 공탁사건의 내용을 알아보실 수 없으므로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변제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
|--|---|
| 1. 공탁통지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5.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불확지 공탁의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담보취소결정정보 3.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
| 일반집행공탁 | 경매집행공탁 |
| 1. 증명서 (기타집행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신분증 | 1. 증명서 (경매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5. 신분증 |
|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은 경매계 또는 기타집행계에도 제출하셔야 하므로 각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
| 해방공탁(공탁자의 회수청구시) | 기타 공통 사항 |
|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가압류 취하(해제)증명원] 또는 [가압류취소결정정보 및 송달증명원] ★ 접수증명원 및 집행해제증명원은 안됨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 | ▶ 법인 아닌 사단·재단(중증, 교회, 사찰 등) 또는 관공서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이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

| | |
|---|--|
| <p>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6. 신분증</p> | <p>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부터 지급청구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p> |
|---|--|

▣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①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②위임인의 인감증명서, ③대리인의 신분증(위임인의 신분증 불요)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공탁금 청구하는 경우 ①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②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③부모 1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위임장(배우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또는 다른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①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또는 관할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4]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 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관 할 공 탁 소 | | | |
| 공탁사건번호 | 년 금 제 호 | 공 탁 종 류 | 공탁 |
| 금 액 (잔액)* | 원 | 공 탁 일 자 | 년 월 일 |
| 공 탁 자 | | | |
| 피 공 탁 자 | | | |
| 관 련 사 건 | | | |
| 지급제한사건 | | | |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 한 위 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급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은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

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5.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신분확인관계상 공탁사건의 내용을 알아보실 수 없으므로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변제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
|--|---|
| 1. 공탁통지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5.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불확지 공탁의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담보취소결정정보 3.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
| 일반집행공탁 | 경매집행공탁 |
| 1. 증명서 (기타집행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신분증 | 1. 증명서 (경매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5. 신분증 |
|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은 경매계 또는 기타집행계에도 제출하셔야 하므로 각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
| 해방공탁(공탁자의 회수청구시) | 기타 공통 사항 |
|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가압류 취하(해제)증명원] 또는 [가압류취소결정정보 및 송달증명원] ★ 접수증명원 및 집행해제증명원은 안됨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 | ▶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교회, 사찰 등) 또는 관공서 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이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

| | |
|---|--|
| <p>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6. 신분증</p> | <p>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부터 지급청구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p> |
|---|--|

▣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①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②위임인의 인감증명서, ③대리인의 신분증(위임인의 신분증 불요)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공탁금 청구하는 경우 ①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②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③부모 1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위임장(배우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또는 다른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①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또는 관할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04호 2019. 12. 27.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5절부터 제7절을 각각 제6절부터 제8절로 하고, 같은 장에 제5절(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제15조의3(규칙 제47조제5항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심사 방법 등) ① 규칙 제47조제5항에 따라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의 재직기간 중 업무공적,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② 임용권자는 규칙 제47조제6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경우 특별승진이 취소된 사람 및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 중인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인사사무규칙」제14조의 인사기록에 즉시 취소사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를 통보받은 사람은 특별승진에 따른 임명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제4항 중 “규칙 제53조제4항”을 “규칙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칙 제53조제3항”을 “규칙 제53조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을 “규칙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근거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로 한다.

제45조제5항 중 “사람”을 “사람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교육훈련과 인사관리) 법원보안관리대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상당계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 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에 특수

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3조의2제1호 나목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업무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근무예정지역을 달리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신설〉</p> | <p>제3장 승진임용</p> <p>제5절 명예퇴직자 특별승진</p> <p><u>제15조의3(규칙제47조제5항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심사 방법 등) ①</u> <u>규칙 제47조제5항에 따라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의 재직기간 중 업무공적,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u></p> <p><u>②</u> <u>임용권자는 규칙 제47조제6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경우 특별승진이 취소된 사람 및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 중인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4조의 인사기록에 즉시 취소사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를 통보받은 사람은 특별승진에 따른 임명장을 반납하여야 한다.</u></p> |
| <p>제5절 승진심사대상 범위 (생략)</p> | <p>제6절 승진심사대상 범위 (종전의 제5절과 같음)</p> |
| <p>제6절 각급기관 정원의 통합 운영 (생략)</p> | <p>제7절 각급기관 정원의 통합 운영 (종전의 제6절과 같음)</p> |
| <p>제7절 채용후보자 등 심사위원회 (생략)</p> | <p>제8절 채용후보자 등 심사위원회 (종전의 제7절과 같음)</p> |
| <p>제34조 (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 ~ ③ (생략)</p> | <p>제34조 (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 ~ ③</p> |

현행

략)

④ 규칙 제53조제1항제8호의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보제한기간의 예외사유인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남용함으로써 전보제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라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지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함).

⑤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당자의 인사전산시스템의 “개인별전보제한기간”란에 “임명일로부터 3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이라고 빠짐없이 입력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6조 (전출상신 대상자) ① 「법원인사사무규칙」제12조에 따른 전출상신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전보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안

(현행과 같음)

④ -----

규칙 제53조제5항-----

-----.

⑤ -----

-----규칙 제53조제4항-----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 (전출상신 대상자) ① -----

-----규칙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현 행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내에 전보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전출상신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0조 (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45조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 또는 비위 등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① ~ ④ (생략)

⑤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⑥ (생략)

<신설>

개 정 안

② 규칙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 (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 또는 비위 등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사람에게
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교육훈련과 인사관리) 법원보안관리대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

| 현행 | 개정안 |
|-------------|--|
| <p>〈신설〉</p> | <p>른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u>임용예정 상당계급에 임용 또는 임용 추천 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제66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3조의2제1호 나목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해당 분야 업무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u> <u>2. 근무예정지역을 달리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u> |

신법령 목록

(2019. 12. 1. ~ 12. 15.)

법률

| | | | | |
|-----------|------------------------------------|-------------|-------|----|
| 법률제16661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2019. 12. 3 | 19640 | 7 |
| 법률제16662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 " | " | 11 |
| 법률제16663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 " | " | 13 |
| 법률제16664호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 " | " | 13 |
| 법률제16665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6 |
| 법률제16666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 " | 21 |
| 법률제16667호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 " | " | 29 |
| 법률제16668호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 " | 31 |
| 법률제16669호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32 |
| 법률제16670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33 |
| 법률제16671호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 " | " | 34 |
| 법률제16672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 " | 42 |
| 법률제16673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 " | " | 43 |
| 법률제16674호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 " | " | 44 |
| 법률제16675호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 " | " | 45 |
| 법률제16676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 " | 45 |
| 법률제16677호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 " | 46 |
| 법률제16678호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 | 47 |
| 법률제16679호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 " | 64 |

| | | | | |
|-----------|--------------------------------------|-------------|-------|-----|
| 법률제16680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2019. 12. 3 | 19640 | 65 |
| 법률제16681호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 " | " | 65 |
| 법률제16682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66 |
| 법률제16683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67 |
| 법률제16684호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 " | 68 |
| 법률제16685호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 " | " | 71 |
| 법률제16686호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 " | 72 |
| 법률제16687호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 " | " | 73 |
| 법률제16688호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75 |
| 법률제16689호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 " | 77 |
| 법률제16690호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 " | 77 |
| 법률제16691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 " | 83 |
| 법률제16692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84 |
| 법률제16693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 " | 84 |
| 법률제16694호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 " | 85 |
| 법률제16695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85 |
| 법률제16696호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 부개정법률 | " | " | 88 |
| 법률제16697호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 " | 89 |
| 법률제16698호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 " | 90 |
| 법률제16699호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 | " | 91 |
| 법률제16700호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 | " | 104 |
| 법률제16701호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 " | " | 111 |
| 법률제16702호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 " | 112 |
| 법률제16703호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 " | 113 |

| | | | | |
|-----------|---------------------------------------|-------------|-------|-----|
| 법률제16704호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9. 12. 3 | 19640 | 113 |
| 법률제16705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 " | 119 |
| 법률제16706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20 |
| 법률제16707호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 " | 121 |
| 법률제16708호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22 |
| 법률제16709호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 " | 126 |
| 법률제16710호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 " | 130 |
| 법률제16711호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35 |
| 법률제16712호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37 |
| 법률제16713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39 |
| 법률제16714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43 |
| 법률제16715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49 |
| 법률제16716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 " | 150 |
| 법률제16717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 " | " | 151 |
| 법률제16718호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 " | 152 |
| 법률제16719호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 " | " | 154 |
| 법률제16720호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 " | 156 |
| 법률제16721호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57 |
| 법률제16722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58 |
| 법률제16723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59 |
| 법률제16724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59 |
| 법률제16725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61 |
| 법률제16726호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 " | " | 165 |
| 법률제16727호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67 |

| | | | | |
|-----------|--|--------------|-------|-----|
| 법률제16728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2019. 12. 3 | 19640 | 167 |
| 법률제16729호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 " | 170 |
| 법률제16730호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 " | 171 |
| 법률제16731호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 | " | 172 |
| 법률제16732호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 " | 172 |
| 법률제16733호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 " | " | 174 |
| 법률제16734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 " | " | 178 |
| 법률제16735호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 " | " | 178 |
| 법률제16736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 " | 179 |
| 법률제16737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80 |
| 법률제16738호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 " | 182 |
| 법률제16739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82 |
| 법률제16740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84 |
| 법률제16741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2019. 12. 10 | 19645 | 7 |
| 법률제16742호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 " | 7 |
| 법률제16743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 " | 8 |
| 법률제16744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 " | " | 9 |
| 법률제16745호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 " | 10 |
| 법률제16746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 " | 10 |
| 법률제16747호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 " | " | 12 |
| 법률제16748호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 | " | 12 |
| 법률제16749호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 " | 13 |

| | | | | |
|-----------|----------------------------------|--------------|-------|----|
| 법률제16750호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 2019. 12. 10 | 19645 | 14 |
| 법률제16751호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 " | 16 |
| 법률제16752호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 | " | " | 17 |
| 법률제16753호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 " | " | 18 |
| 법률제16754호 |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 | " | " | 18 |
| 법률제16755호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 " | " | 19 |
| 법률제16756호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 " | " | 19 |
| 법률제16757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 " | 20 |
| 법률제16758호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 " | 21 |
| 법률제16759호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 " | 22 |
| 법률제16760호 |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 | " | " | 22 |
| 법률제16761호 | 군인 재해보상법 | " | " | 44 |
| 법률제16762호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67 |
| 법률제16763호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68 |
| 법률제16764호 |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 " | " | 70 |
| 법률제16765호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 | " | " | 70 |
| 법률제16766호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 " | " | 72 |
| 법률제16767호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73 |
| 법률제16768호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 " | " | 75 |
| 법률제16769호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 " | 85 |
| 법률제16770호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 " | 86 |
| 법률제16771호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 | " | 87 |
| 법률제16772호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 " | " | 89 |
| 법률제16773호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94 |

| | | | | |
|-----------|--|--------------|-------|-----|
| 법률제16774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2019. 12. 10 | 19645 | 96 |
| 법률제16775호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 " | 106 |
| 법률제16776호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 " | " | 107 |
| 법률제16777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07 |
| 법률제16778호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 " | " | 108 |
| 법률제16779호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 " | " | 110 |
| 법률제16780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 " | " | 112 |
| 법률제16781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 " | 113 |
| 법률제16782호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 " | 115 |
| 법률제16783호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 " | " | 116 |
| 법률제16784호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 " | " | 118 |
| 법률제16785호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 " | 118 |
| 법률제16786호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 " | " | 119 |
| 법률제16787호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20 |
| 법률제16788호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20 |
| 법률제16789호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 " | " | 121 |
| 법률제16790호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 " | " | 122 |
| 법률제16791호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 " | 123 |
| 법률제16792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 " | " | 124 |
| 법률제16793호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25 |
| 법률제16794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 " | 126 |
| 법률제16795호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 " | 127 |
| 법률제16796호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 " | 127 |
| 법률제16797호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 " | 128 |

| | | | | |
|-----------|-----------------------------------|--------------|-------|-----|
| 법률제16798호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2019. 12. 10 | 19645 | 129 |
| 법률제16799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32 |
| 법률제16800호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 " | " | 137 |
| 법률제16801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 " | " | 138 |
| 법률제16802호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 " | 139 |
| 법률제16803호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 " | 140 |
| 법률제16804호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 " | " | 142 |
| 법률제16805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43 |
| 법률제16806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47 |
| 법률제16807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49 |
| 법률제16808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50 |
| 법률제16809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51 |
| 법률제16810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 " | " | 153 |
| 법률제16811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 " | " | 154 |
| 법률제16812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 " | 156 |
| 법률제16813호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 " | " | 157 |
| 법률제16814호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 " | " | 158 |
| 법률제16815호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 " | 158 |
| 법률제16816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 " | 159 |
| 법률제16817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60 |
| 법률제16818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 " | 160 |
| 법률제16819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 " | 161 |
| 법률제16820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 " | " | 162 |
| 법률제16821호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63 |

| | | | | |
|-----------|--------------------------------------|--------------|-------|-----|
| 법률제16822호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 2019. 12. 10 | 19645 | 164 |
| 법률제16823호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65 |
| 법률제16824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 " | 166 |
| 법률제16825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67 |
| 법률제16826호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 " | 168 |
| 법률제16827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68 |
| 법률제16828호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 " | 169 |

조 약

| | | | | |
|----------|--|--------------|-------|----|
| 조약제2439호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 2019. 12. 11 | 19646 | 4 |
| 조약제2440호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협정 | " | " | 16 |
| 조약제2441호 |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 | " | 30 |
| 조약제2437호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2019. 12. 12 | 19647 | 4 |
| 조약제2438호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 " | " | 13 |

대통령령

| | | | | |
|-------------|---|-------------|-------|-----|
| 대통령령제30221호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2019. 12. 3 | 19640 | 185 |
| 대통령령제30222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187 |
| 대통령령제30223호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 " | 188 |
| 대통령령제30224호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189 |

| | | | | |
|-------------|--|--------------|-------|-----|
| 대통령령제30225호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19. 12. 3 | 19640 | 189 |
| 대통령령제30226호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191 |
| 대통령령제30227호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 " | 191 |
| 대통령령제30228호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 " | 195 |
| 대통령령제30229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196 |
| 대통령령제30230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197 |
| 대통령령제30231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201 |
| 대통령령제30232호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202 |
| 대통령령제30233호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202 |
| 대통령령제30234호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203 |
| 대통령령제30235호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2019. 12. 10 | 19645 | 170 |
| 대통령령제30236호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172 |
| 대통령령제30237호 |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173 |
| 대통령령제30238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179 |
| 대통령령제30239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189 |
| 대통령령제30240호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190 |
| 대통령령제30241호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 " | " | 191 |
| 대통령령제30242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197 |
| 대통령령제30243호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 | " | 199 |
| 대통령령제30244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205 |
| 대통령령제30245호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 208 |

총리령

총리령제157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2. 3

19640

203

| | | | | |
|-----------|------------------------|--------------|-------|----|
| 총리령제1575호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2019. 12. 4 | 19641 | 4 |
| 총리령제1576호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2019. 12. 6 | 19643 | 4 |
| 총리령제1577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019. 12. 12 | 19647 | 20 |

부령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령제401호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일괄개정령 | 2019. 12. 2 | 19639 | 4 |
| 고용노동부령제267호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 " | 5 |
| 해양수산부령제375호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 " | 6 |
| 기획재정부령제756호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019. 12. 3 | 19640 | 220 |
| 교육부령제196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 " | 225 |
| 산업통상자원부령제356호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 " | 225 |
| 기획재정부령제757호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019. 12. 4 | 19641 | 11 |
| 국방부령제1001호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 " | 12 |
| 행정안전부령제144호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 " | 15 |
| 외교부령제73호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019. 12. 5 | 19642 | 4 |
| 해양수산부령제376호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 " | 5 |
| 국토교통부령제676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2019. 12. 6 | 19643 | 13 |
| 교육부령제180호 | 규제재검토 결과에 따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 " | 14 |
| 국토교통부령제672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019. 12. 9 | 19644 | 4 |
| 국토교통부령제673호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 " | 6 |
| 국토교통부령제674호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 " | 8 |
| 국토교통부령제675호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 " | " | 10 |

| | | | | |
|-------------|---|--------------|-------|-----|
| 해양수산부령제377호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019. 12. 10 | 19645 | 210 |
| 보건복지부령제689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019. 12. 12 | 19647 | 27 |
| 보건복지부령제690호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 " | 30 |
| 교육부령제197호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019. 12. 13 | 19648 | 6 |